

## 경제적 합리성의 재해석: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 문 병 기

Concerned with pessimistic evaluation on the social enterprise program of the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argues re-examination of economic rationality and fundamental review of the program. Social enterprises are individual firms practicing social economic activities and social economy is an alternative economic system pursuing the transformation of market economy toward a more social and equitable system. In sum, it is necessary for the social enterprise program of Korean government to focus on the incubating new economic unites which can coordinate market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civic rights of labor class. To verify the argument, this study performs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and economy of communion enterprises.

Based on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this study finds out that economy of communion enterprises generally have better financial independence,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contribution to affiliated community, mutual trust between business owner and employees, ideal motivations playing pivotal role, and unconditional altruistic sharing than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As a policy alternative, this study suggests involvement of managerial expertise and positive exchanges of experience based on the stage model of Molteni (2002)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ly innovative business.

---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주 제 어: 경제적 합리성, 우리-합리성,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공유경제기업

Keyword: economic rationality, we-rationality,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economy of communion enterprise

## I. 서론

우리에게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라는 개념이 소개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1997년 IMF 경제위기를 즈음하여 빈곤과 실업 및 사회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안적 경제 주체로서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특히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일자리창출이라는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일반화되고 있다. 통상적인 영리추구 위주의 기업에서는 더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신에 사회복지 등의 비영리부문 또는 제3섹터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고용창출의 여지는 크다고 본 듯하다. 분명,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사업은 소위 유럽형 모델에 기반을 두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국내의 사회적 기업들은 그다지 낙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즉, 2007년 이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적용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업체에게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운영현황을 통해 볼 때, 애초 정부가 추구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 효과 면에서나 경제 전반적인 개혁성에 있어서 그 본연의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박 준, 2009; 양용희, 2009; 이정봉, 2010; 장원봉, 2009).

이러한 부정적 내지 유보적 평가의 원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다양한 원인 중에서, 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평등주의적 복지시책 내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사업의 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합리성의 재해석 자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심층적인 재해석에서부터 사회적 기업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의 기본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그러한 개념적 성찰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본질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우리 시대적 적실성과 효과성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의 재해석과 이를 통한 사회적 기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과 동일한 뿌리를 두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소위 공유경제기업과의 비교사례연구가 필요하다. 기독교사회주의의 현실적 개선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면서도,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복지사업 실천조직으로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공유경제기업은 숫자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지만 분명 사회적 경제 초기 단계의 이상형에 비교적 충실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연구이슈를 제시하고 그에 답하고자 한다.

- ① 경제적 합리성의 재해석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 ② 이러한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의 차이는 어떠한 이유에서 초래되고 있는가?

- ③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의 재해석과 사회적 기업 및 공유경제기업의 정신을 경제·사회 일반에 적용함으로써 시장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방법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1. 사회적 경제

#### 1)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기업의 기원

사회적 기업의 본원적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용어의 사용과 관련된 논란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활동을 실천하는 개별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들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기업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économie sociale)의 유래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00년을 전후하여 활동한 프랑스의 경제사상가 샤를 지드(Charles Gide)였다. 실용적 개량주의자였던 지드는 당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진행되면서 유발한 갖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응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적 경제를 “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더욱 사회적(social)이고 공평한(equitable) 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적 체제”로 상정하였던 것 같다. 기독교사회주의자로서 협동조합운동에 심취했던 지드는 확실히 사회변혁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주창하려는 의도를 가졌다(신명호, 2009: 8).

이러한 지드의 사상은 이후 사회주의적 전통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사회·경제적 목적을 지닌 협동조합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루이 블랑(Louis Blanc) 및 생시몽(Saint Simon)이나 푸리에(Fourier) 같은 사회주의자,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택하여 사회·윤리적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이야말로 외부의 지원 없이 노동자가 자조적(self-help) 노력으로 노사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믿었던 필립 뷔셰(Philippe Buchez)등이 모두 그러한 부류라고 할 것이다.

한편, 19세기 후반부의 사회주의적 투쟁과 노력은 1901년을 계기로 전환기를 맞게 된다. 즉, 그 이전까지 정치적으로 불온시 되어오던 민간결사체들이 법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투자자의 권한, 즉 이윤배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협동조합(cooperative), 상호공제조합(mutual insurance), 민간단체(association) 등의 대안적 조직들이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보완적 경제주체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샤니알 & 라빌, 2008; 133-115). 즉, 프랑스 및 이태리문화권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시민권과 연대의 정신, 자유로운 멤버십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 자본주의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본가 개인의 이윤보장을 견제·제한하면서 집합적 자산을 공고히 하며, 시장경제와 노동자의 시민권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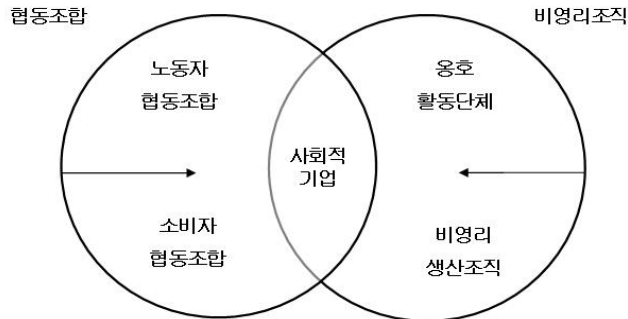
## 2) 사회적 기업의 특성 및 한계<sup>1)</sup>

사회적 경제의 개념 하에서, 유럽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협동조합과 제3섹터의 중간 접합점과 동일시되고 있는 듯하다. 엄격히 말하면, 협동조합이란 전통적으로 구성원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하는 상호부조 내지 자조적인 조직인데 반해, 사회적 조직은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 비회원의 이익도 고려하는 광의적 '연대'에 기초한 공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과 동일시할 수 없다(뎡크너 & 강일선, 2006: 213-218). 또한 유럽에서의 제3섹터는 비영리조직과 동일시하는 미국과 달리,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국가 부문과 밀접히 협력·통합하는 복지혼합(welfare mix) 또는 복지의 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일부분으로 해석되고 있다(Evers & Laville, 2004: 14).

사회적 경제 개념의 본원지인 유럽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은 공익성을 띤 사회적 목적과 운영의 자율성, 사람 중심의 의사결정구조, 이윤배분의 제한 등의 규범적 내용에 비중을 두면서 정의되고 있다. 유럽의 제3섹터 연구네트워크인 EMES(L'Emergence des Enterprise Sociales en Europe)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다음의 아홉 가지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즉, 첫째 경제 및 경영의 차원에서는 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 ② 자율성(autonomy)이 높을 것, ③ 재정자립을 위해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할 것, ④ 최소한의 유급 노동이 있을 것,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⑤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이 명확할 것, ⑥ 욕구나 목적이 같은 그룹 혹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우선적인 주체가 될 것, ⑦ 의사결정이 자본의 소유 정도에 좌우되지 않을 것, ⑧ 사업에 관여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⑨ 이윤 배분에 제한이 있어서 이윤을 극대화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이다(Nyssens, 2006: 5-6).

이러한 개념정의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습은 다음의 (그림-1)을 통해 요약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의 공집합에 위치한 조직으로서,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고 생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에 비해 공동체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지향하는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이해집단이 단일한 협동조합에 비해 보다 넓게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유럽사회 내 전통적 의미의 민간단체(association)에 비해, 사회적 기업은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도전 정신을 강조하고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옹호활동을 하는 기구나 후원금을 모금하는 재단 등의 비영리 조직들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생산에 관여하는 민간조직이라는 성격을 보유한다(Defourny & Nyssens, 2006: 8-9).

1) 본 논문에서는 유럽형, 특히 프랑스와 이태리의 사회적 경제모델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비영리성과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미국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모형화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논의의 명확성이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그간의 관행에 대한 적실성 등을 종합할 때, 미국형 사회적 경제주체 모델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자료: Borzaga & Defourny(2001); 신명호(2009), p.20 에서 재인용.

(그림-1) 사회적 기업의 개념적 범주

한편, 최소한 1960년대까지 진행되어 온 유럽의 사회적 경제모델은 폴라니(K. Polanyi)가 제시한 소위 세 가지 경제원칙 중, 호혜성(reciprocity)이나 재분배 보다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교환에 치중하게 되었다. 즉, 그간의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들은 초기의 정치·사회적인 개혁의지와는 유리되어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독점적 정부기관화되었다.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 잡은 협동조합 내지 제3섹터 모델은 국가 차원의 제도화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기부터의 경제적 위축 속에서 지속적인 팽창과 생존의 필요성에 의해 시장경제 영역을 넘나들며 전문화와 이익창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국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에서부터 조직 구성원과 이익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성과간의 관계만이 강조되고, 조직된 행동의 상호주관적 차원(intersubjective dimension of organized action)으로서의 공적 역할이라는 핵심은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신명호, 2009: 10-15).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최근 우리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및 사회정책부문 관계자들의 시각이 자칫 유럽형 사회적 경제조직의 실패 경험을 뒤따라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을 갖고 있다. 즉, 기독교사회주의자로서 시장경제와 노동자 시민권 신장의 절충을 위한 자발적·자생적 경제주체의 탄생을 추구했던 샤를 지드의 실용적 개혁운동이 복지국가 모형의 팽창에 편승한 국가대행의 복지기관화 및 조직생존논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경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생산성과 호혜성에 대한 초점이 희석되고 관권적·실적위주의 복지사업 운영요소에만 치중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본연의 개념적 승화와 제도적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기도 하다.

## 2. 경제적 합리성의 연원과 재해석

### 1) 전통 경제적 합리성의 연원 및 의미

개인적인 인간의 고유성(uniqueness)과 권리(rights)에 대한 존중은 서구 문화, 특히 기독교

교의 오랜 유산들 중 하나이다. 경제학은 개인적 인간의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학문 영역의 하나이다. 사실 18세기 후반의 경제학자들은 인간에 관한 연구의 모호성으로 인해 인간의 삶 자체보다는 그 일부로서의 개인을 선택해 연구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즉, 개인들은 거래를 하기 전에는 분리가능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에서 연구가 출발하였다. 이러한 개인적 접근방식은 현재까지 1세기 이상에 걸친 점진적 과정을 통해 구축되었다.

초기 경제학자들은 사실 오늘날의 경제학자들보다 훨씬 덜 개인주의적이어서, 18세기와 19세기 초반까지의 경제학자들은 부(wealth)와 관련된 모든 사회 현상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수학적 분석과 계량적 접근방법의 등장을 통해 경제학자들은 현실에서 개인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고립된 경제인(solipsistic homo economicus)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라 부른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경제학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다. 그러한 비판은 한마디로 경제사회적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고립된 개인과 그 행동을 분석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며, 계급·사회 또는 국가에 주요 초점을 맞춘 전체주의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대안으로서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런 비판이나 대안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동, 선호 및 선택이 국가 및 우리(we)와 같은 집합체의 행동, 선호, 선택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분석가능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기왕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사실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공식화시킨 경제학의 모든 내용들은 경제적 합리성(economic rationality)을 밑에서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즉 도구성(instrumentality)과 철학적 자기중심주의(philosophical egoism) 위에 놓여있다. 경제적 합리성은 '최적의 행동(optimal behavior)'이라는 아이디어를 설명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즉, 개인의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 행동이라고 한 데서 먼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도구주의적 접근방식은 인간행동의 합리성을 그 내재적 내용에 의해 판단하기보다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에 의해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행동의 합리성을 결정하는 것은 목표와 수단 자체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인 것이다. 이를 전통적 경제적 합리성의 1차적 개념이라고 한다.

나아가 일단 경제적 행위주체의 욕구와 선호가 결정되면, 합리적 선택의 판단기준은 목적함수의 극대화로 변환된다. 이는 전통적 경제적 합리성의 2차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경제적 합리성의 시각 하에서는 자아(ego)만이 중요하며 개인들 간의 모든 관계는 하나의 도구적 관계로 축소된다. 결국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도구성(instrumentality)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Bruni, 2002: 42-48).

## 2) 경제적 합리성의 재해석

전통 경제적 합리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게임이론은 경제적 선택

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게임이론은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통해 전통적 경제적 합리성에 포함된 개체주의(individualism)의 합정과 딜레마를 매우 효과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딜레마 상황이 이기주의의 내지 자기중심주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죄수의 딜레마게임을 시장경제에서 이타주의를 방어하고 이기주의의 파괴성을 표방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사실 게임의 맥락이 변화한다면 우리는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두 명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타적일 때도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gden, 1993). 죄수의 딜레마게임을 통해 우리는 도구주의와 개체주의에 기초한 경제적 합리성이 얼마나 심각한 경제적 실패를 가져오는 지를 분명히 알아듣게 된다. 무한반복게임(infinite iterated game)에서 볼 수 있는 상대방 전략과 그 결과에 대한 학습이 비극적 결말을 어느 정도 방지해줄 수는 있겠지만, 게임이론의 방법론이 여전히 도구적이며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한, 전통적 경제적 합리성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전통 경제적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최근의 시도는 자아(ego)적 합리성을 뛰어넘는 우리-합리성(we-rationality)의 개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mith, Rousseau, Genovesi와 같은 고전적 연구와 궤를 같이 하는 Sugden과 Hollis의 연구(Sugden & Hollis, 1993; Hollis, 1998)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Sugden과 Hollis는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성은 상호 보완적이며, 이런 측면에서 상호 신뢰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합리적 신뢰(rational trust)'이론을 통해, 신뢰는 오직 호혜성(reciprocity)에 근거한 대인관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합리적이다. 신뢰하는 관습이 사회 저변에 널리 퍼질 것이라는 기대와 이러한 신뢰의 관행이 모두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는 신뢰의 개별행위 이면에 숨겨진 합리성을 위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합리성은 개인이기주의가 오직 집단의 목적 달성 하에서만 개인의 의미가 있는 집단이기주의로 대체될 뿐인 방식의 합리성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합리성은 개체성의 가치를 사회성과 합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합리성은 팀멤버십 하에서도 독립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기본 구성단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조직 내 의사결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이 온전히 살아 있어야 우리-합리성이 성립하는 것이다.

우리-합리성은 경제학의 전통적인 철학적 근거인 개인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 및 도구적 합리성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독립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다. Sugden(1993)은, 팀의 구성원들은 팀의 목표달성을 위한 통합적 계획(concerted plan)에 따라 스스로 강요받지 않더라도 사전에 미리 정해진 역할을 수행한다면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인과 효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도구적이고 무엇이 도구적이지 않은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 우리-합리성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은 모든

팀의 구성원의 행동이 만들어 낸 전체의 일부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한다. 즉, 그 사람에게 있어 행동은 함께 좋은 결과를 생산한 전체 중 일부라는 의미 안에서만 합리적이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은 팀 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개인의 동기이다. 대표적인 사회적 행위인 헌혈은 우리 심리구조 속 깊이 잠재하고 있는 관계의 연결망(networks of relationship)에 대한 소속감(sense of belonging), 즉 사회적 자본에 기초하여 작동한다. 그러나 관계의 연결망 속에서 벗어난 완전한 타인(stranger)에 대한 일반화된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 하에서의 이타적 행위는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에 속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J. J. 루소가 말한 “인간 내부의 급진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 3) 우리-합리성의 특징

사회적 경제조직 내에서 발견될 수 있는 행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합리성에 대한 특징적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Bruni, 2002: 58-66).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합리성의 특징들은 일치의 정신(spirituality of unity) 내지 관계의 연결망에 대한 소속감으로부터 발현한다.

첫째, 공유의 경제에는 공동체로의 강력한 소속감, 보편적 개방성(universal openness)에 대한 열망과 우리의식(sense of we)이 존재한다. 만약 우리-합리성이 보편적 개방성과 양립하지 못한다면, 우리-합리성은 마피아와 같은 범죄 집단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기부의 문화(culture of giving)를 형성하기 위하여 공유경제기업체들이 내놓는 이윤의 3번째 부분(the third of the profits)은 이러한 보편적 형제애(universal brotherhood)의 표현이다.

둘째, 공유의 경제에는 타인과의 관계가 중심적 가치를 담당한다. 사람은 항상 타인과 구성적 관계(constitutive relation)에 있다. 각 개인의 모든 결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개인은 고립된 주체(isolated subject)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속의 주체(subject-in-relation)가 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타인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그 자신일 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셋째, 공유의 경제에는 내재적인 이상으로부터의 동기부여(intrinsic ideal motivation: 자신의 이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현적 합리성(expressive rationality)'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종류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개성 또는 가치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소망에 의해 나타나는 경제적 행동을 주로 지칭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내가 윤리적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나의 수단-목적관계를 최적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경제나 인생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윤의 일부를 공동소유로 내놓은 사회적 경제 내지 공유경제사업에 매진하는 것이다.



넷째, 공유의 경제에는, 타인의 반응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타인의 반응이 필수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는 호혜성이 중요하다. 공유의 합리성(rationality of communion)의 가장 큰 특성은 어떠한 단서도 붙지 않는 무조건적인 호혜성(unconditional reciprocity)이라는 것이다. 조건성(conditionality)은 내가 무언가를 협력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호혜성에 대한 이해와 일치한다. 물론 우리-합리성도 어느 정도의 조건성과 감사의 표시(gratuity)는 필요하다. 그러나 공유의 합리성은 사전 조건적 합리(ex-ante conditional rationale)라기 보다는 사후 조건적 합리(ex-post conditional rationale)이다. 즉, 타인에 대한 개방성은 무조건적인 사전적 사례금에 해당하며, 이러한 최초의 호의는 인간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Vittorio Pelligra의 경제실험에 의하면, 행위주체들은 자신이 먼저 타인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한 신뢰를 되갚으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고 한다.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게임의 성공요건이 되는 수혜적 타인의 사후답례와 상호성의 태도는 최초의 호의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것이다.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을수록 다시 되갚으려는 주체적 노력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 Ⅲ.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 현황분석

#### 1. 연구방법론 및 가설의 설정

본 논문은 최근 우리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및 사회부문 관계자들의 시각이 자칫 유럽형 사회적 경제조직의 변질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즉,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과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주면서 소위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국가공인 업체에만 쓰게 하는 고용노동부를 위시한 국가 정책당국의 완고한 태도는 분명 권위주의화 내지 경직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기독교사회주의자였던 샤를 지드의 실용적 개혁운동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이어지면서, 사회적 경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생산성과 호혜성이 약해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옹호활동 및 재분배와 같은 개혁적·평등적 복지요소에만 치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도구적-사전조건적 의미의 호혜성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개념적 승화가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적 합리성의 개념 속에 내재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옹호활동 및 개혁적·평등적 복지사업에 대한 강조가 자칫 집단적·계급적 이기주의에 포획되면서 이러한 승화와 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합리성의 재해석 자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심층적인 재해석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기업모형의 본원적 요소들이 인증 사회적 기업 대부분 속에 현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한 개념적 성찰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본질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적실성과 효과성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에 이어, 사회적 기업과 동일한 뿌리를 두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소위 공유경제기업과의 비교사례연구가 필요하다. 공유경제기업체들은 자체적 판단에 따라 굳이 고용노동부 인증절차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기업활동을 이미 오래전부터 수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된 접근방법은 문헌조사와 함께 질적 연구로서 2008년 5월부터 시작되어 2010년 12월 초까지 이어진 참여관찰과 심층면접 및 비교사례조사를 병용한다. 즉, 아직 사회적으로 전면에서 나서지 않고 있는 공유경제기업의 사회적 경제주체로서의 독특한 행태에 대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결과를, 이미 상당한 정도로 축적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현황분석 결과와 상호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본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전통 경제적 합리성의 재해석 및 우리-합리성의 핵심요소가 이들 두 그룹의 사회적 기업의 실제 운영현장에서 얼마나 명시적·묵시적으로 발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우리-합리성의 구현만이 시민적 덕성(civic virtues)에 의해 자율 규제되는 새로운 시장경제모형의 구축이라는 활로 모색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연구는 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s) 및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ed definition)는 다음과 같다.

- ① 인증된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은 자조적 경제공동체로서의 자발성 차원(조작적 정의: 생산 활동을 통한 이윤창출의 정도, 재정적 독립성)에서 어떻게 다른가?
- ② 인증된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은 시장경제와 노동자 신민권의 절충 차원(조작적 정의: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참여 및 개방의 정도)에서 어떻게 다른가?
- ③ 인증된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은 우리-합리성의 보편적 개방성 차원(조작적 정의: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기여 및 인정)에서 어떻게 다른가?
- ④ 인증된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은 우리-합리성의 구성주의적 차원(조작적 정의: 노사간 상호 신뢰관계의 조성 노력)에서 어떻게 다른가?
- ⑤ 인증된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은 우리-합리성의 이상적 동기에 기초한 표현적 합리성 차원(조작적 정의: 공유경제 이상을 일상 기업 운영활동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에서 어떻게 다른가?
- ⑥ 인증된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은 우리-합리성의 무조건적·사전적 호혜성 차원(조작적 정의: 무조건적 나눔의 정도 및 보답 현황)에서 어떻게 다른가?

## 2. 운영 현황 분석

### 1) 사회적 기업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지난 10년간의 평등주의적 정권의 복지정책 기조와 한국경제의 현실이 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경향이 마침내 평등주의적 정권을 창출하면서 국가주도적인 복지정책의 전면적 확대가 당연시되었다. 한편,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경제의 고도화와 함께 IMF시기를 즈음에서는 대량실업과 노숙자 양산 및 가정파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고용 없는 성장현상의 지속과 사회적 욕구의 분출 및 다양화가 이어졌다. 특히 기존의 자활지원센터나 자활공동체를 통한 각종 자활사업이 수익성 추구의 한계, 고용의 비지속성, 과도한 정부에의 의존 경향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그 효과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자활사업모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황미영, 2007; 김순양, 2008).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프랑스식의 준정부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재의 국가가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위주의 사회적 기업모형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는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와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에 명시된 인증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민법」 상 법인·조합, 「상법」 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sup>2)</sup>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③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⑤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⑥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⑦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2)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따른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리고 기타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을 의미한다.

⑧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이러한 인증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07년 이후부터 2010년 6월 현재까지 총11차례에 걸쳐 사회적 기업 인증사업을 실시하였다<sup>3)</sup>. 즉, 인증 신청을 한 718개 기관(2007년 1차 113개, 2차 53개, 2008년 1차 54개, 2차 46개, 3차 81개, 4차 104개, 2009년 1차 45개, 2차 19개, 3차 57개, 4차 83개, 2010년 1차 63개)을 대상으로 인증심사위원회의 사전 검토, 사회적 기업(설립)인증 지원기관의 현장실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차에서 32개<sup>4)</sup>, 2차 18개, 2008년 1차 29개, 2차 23개, 3차 47개, 4차 61개, 2009년 1차 26개, 2차 8개, 3차 17개, 4차 26개 기관, 2010년 32개 기관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였다. 총 718개 기관이 신청하여 최종 330개 기관이 인정되어 평균 인증률은 45.96%로 나타났다. 한편, 인증된 사회적 기업 330개 중, 이후 인증 취소 및 반납, 폐업한 기업이 11개로써,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은 최종 319개로 집계되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 2차 연도인 2008년에는 평균 인증률이 57%를 넘었으며, 3차 연도인 2009년에도 4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12년까지 총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표-1> 사회적 기업 신청 및 인증기관(2010년 6월 현재)

(단위 : 기관수, 구성비)

차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1차
신청기관	113	53	54	46	81	104	45	19	57	83	63
인증기관	32	18	30	24	48	64	26	8	17	26	32
인증률	28.3	34.0	55.6	52.2	59.3	61.5	57.8	42.1	29.8	31.3	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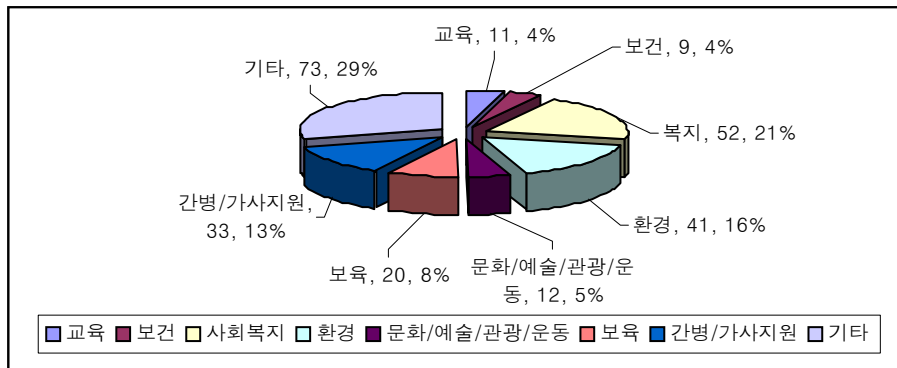
319개 기관의 소재지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의 147개 기관으로 나타나 전체 사회적 기업의 46.1%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해보면 광주·전라권이 46개 기관(14.4%)로서 부산·울산·경남권(37개소, 11.6%), 대전·충청권(32개소, 10.0%), 대구·경북권(27개소, 8.5%)에 비해 인증기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강원권과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각각 21개, 9개 기관씩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구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인증률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1) 교육, 2) 보건, 3) 사회복지, 4) 환경, 5) 문화·예술·관광·운동, 6) 보육, 7) 산림보전·관리, 8) 간병·가사지원, 9) 기타의 9개

3) 실질적인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는 (재)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동 재단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4) 2007년 1차 인증 심사 당시 애초에 인증된 기관은 36곳이나 이후 4개 기관이 인증 취소되어 총 32개 기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 중에 있다.

범주<sup>5)</sup>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업종유형에 따라 319개 사회적 기업의 사업내용을 분석해보면 제조업 등 구체적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분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91개로서 전체의 28.5% 수준이며 환경(62개), 사회복지(56개), 간병·가사지원분야(39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통적 사회복지분야라고 할 수 있는 복지, 보육, 간병/가사지원 분야 기업이 전체의 2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기에 이번 2010년 사회적 기업 개요집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보건분야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다면 인증 사회적 기업 중 거의 3분의 1 이상이 사회적 경제 실천 조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제적 자생성과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 능력의 지속적 보유라는 측면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sup>6)</sup>.

(단위 : 기관수,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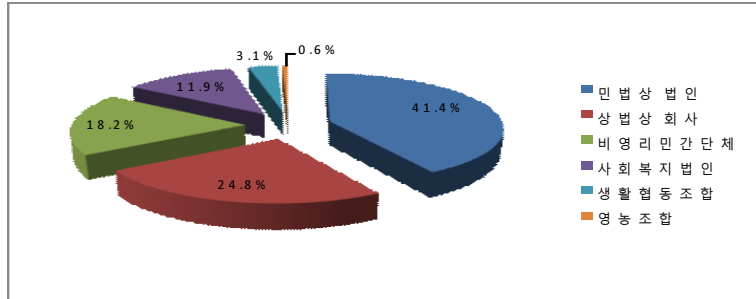


(그림-2) 사회적 기업의 업종유형(2009년 8월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가능한 조직형태를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규정해두고 있다. 319개 사회적 기업을 조직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의 수가 132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민법상 법인 79개이며,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을 모두 합쳐 108개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조직들이 진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인 조직형태별 분포는 (그림-3)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약 30.1%가 생산활동 및 이를 통한 이윤창출에 대한 이해가 견고하다고 할 수 없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으로 구성됨으로써 사회적 경제 실천조직의 원형적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5) 업체가 복수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다.  
 6) 실제로 바로 1년 전인 지난 2009년 8월 현재 자료에 의하면 보건, 복지, 보육, 간병/가사지원 분야 기업이 전체 251개 인증 기업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었다.  
 7) 사회적 기업이 법인 내 사업단일 경우에는, 모법인의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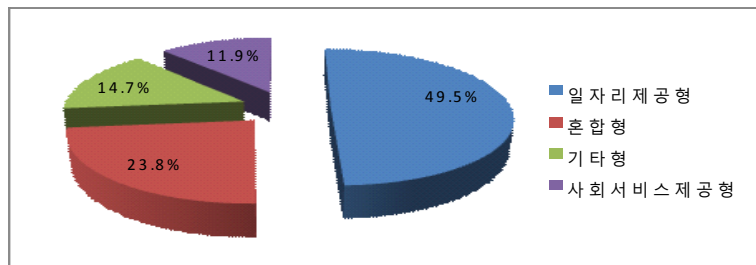
(단위 : 기관수, 구성비)



(그림-3)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2010년 6월 현재)

2010년 제1차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 시점까지 신청서에 기재된 각 기관의 유급근로자는 총 8,977명으로 기관당 평균 28.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2009년 사회적 기업 개요집에 따르면, 회차별 평균 유급근로자 수를 나타낸 도표를 통해 2007년 1차 인증 시에는 규모가 큰 조직들이 다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8월 현재 251개 인증기관 중 100인 이상 고용업체가 8곳인데 이들 중 5개 기관이 2007년 1차에 인증되었으며, 당시 5인 이하 사업장이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그러나 2008년 4차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27곳으로 소규모 사업단이 사회적 기업으로 다수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기관수, 구성비)



(그림-4) 사회목적 실현유형(2009년 12월 현재)

사회적 기업 중 다수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제4차까지 인증된 사회적 기업 287개를 그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일자리제공형(158개; 49.5%), 혼합형(76개; 23.8%), 기타형(40개; 14.7%), 사회복지서비스제공형(35개; 11.9%) 순으로 나타나, 관련법에서 주목하는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두드러지는 형태일 뿐만 아니라 1년 전인 2009년보다 많이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별 기업의 목적에 있어서는 아직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한편 2009년 6월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의 유급 근로자 수 5,056명 대비 취약계층 근로자는 36.3%를 차지하고 있다.

## 2) 공유경제기업

1943년 이탈리아 북부의 트렌토에서 키아라 루빅(Chiara Lubich)에 의해 창설된 포콜라레 운동(Focolare Movement)은 범종파적 기독교개혁 및 수도단체의 하나로서, 사회 혁신을 이루는 새 인류 운동과 새 가정 운동, 일치된 세계를 위한 청소년 운동, 교회공동체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1991년부터 빈부의 격차 극복 및 경제적 차원의 기독교 이상 실현을 위해 초기의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리에 따라 소위 “공유경제(economy of communion)”의 실천을 천명하고 경영방식을 혁신하는 기업운동을 시도하였다. 남미와 유럽을 위시한 30여 개국에서 2010년 5월 현재 약 760여개의 기업들이 공유경제의 이상을 실천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크게 3분하여 25%의 기업은 제조분야에서, 30%의 기업은 산업분야에서, 그리고 45%의 기업은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간매출 2천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들이나, 이탈리아에서는 3명의 기능공이 일하던 작은 기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260명을 고용하는 대규모 기업으로 발전한 예도 있다.

공유경제기업들이 집단적으로 개발·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브라질 상파울로 교외에 있는 아라첼리 소도시 가까이에 위치한 스파르타코 공업단지가 있다. 5만 평방미터의 이 단지는 합자회사인 ESPRI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회사는 2천명 이상의 주주들이 있는데 대부분 브라질 사람들이다. 이 회사는 단지를 개발하여 1998년 말까지 12개의 사업체를 입주시켰으며 그 중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                       |                             |
|-----------------------|-----------------------------|
| * LA TUNICA : 의류회사    | * GRANJA PIU PIU : 돼지농장     |
| * ROTOGINE : 플라스틱 제품  | * ESCOLA AURORA : 유치원과 초등학교 |
| * ECOAR : 병원/기업용 세제생산 | * BETIO MAQUINAS : 엔지니어링 회사 |
| * SHAOM : 회계회사        | * POLICLINICA AGAPA : 병원    |

한국에서도 공유경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0년 5월 현재까지 8개 업체가 확인되고 있다. 고용규모는 작게는 4-5명에서부터 크게는 100명의 유급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업종은 출판업, 제과요식업, 기계생산 및 유통업, 컴퓨터 및 정보제공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양하다.

이들 공유경제기업 중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A출판사는 주 5일 근무제, 야근 폐지, 예산 공개 등 당시 일반 기업들이 실시하지 않았던 제도들을 실험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21년간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되어오고 있다. 특히 ‘한국일보 출판 제작상’ 등의 여러 상을 수상하면서 철학도서 전문의 출판사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에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공유경제에서 제안하는 바에 따라 사업 재투자를 위해서는 순이익의 1/3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2/3은 사회적 약자나 인재 양성기관 건설 등의 이상적 목표 실현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제과점에서 시작하여 종합요식업체로 성장한 대전광역시 소재 B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상당히 활발하여 이익의 배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발전사업에도

동참하고 있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수의 표창을 받은 바 있다. B사는 2010년 회사의 목표를 “모두가 모두를 위해”라고 정하고 공동선 실현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나아가 B사는 소위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일곱 가지 색깔로 분류한 업무를 실천해가고 있다<sup>9)</sup>. 이를 통해 공유경제 기업 이념에 맞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그 결과의 회사직원들에 대한 전면 개방, 정직한 세금납부,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직원 가정의 방문을 통해 기업주와 직원이 모두 하나가 되는 가족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다.

### 3) 연구질문 별 비교분석

제1질문: 인증된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은 자조적 경제공동체로서의 자발성 차원(조직적 정의: 생산 활동을 통한 이윤창출의 정도, 재정적 독립성 등)에서 어떻게 다른가?

공유경제 기업들은 전부 정부의 지원과는 전혀 무관하게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애초에 사회복지기관이었던 곳은 하나도 없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사업을 운영하기 훨씬 이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공유경제의 원리에 의해 기업경영 방식을 혁신하고 지역공동체 및 공익실현을 추구하여 경영일선에서 실천해 오고 있던 기업이 대부분이므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정부지원 규모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공유경제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통한 기업체운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당수 인증 사회적 기업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이러한 재정적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기업들이 기업운영에 있어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증 사회적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 사실 논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거의 모든 중소기업체에서 공통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윤추구 외에 추가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이들 두 그룹의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보다 어려운 재정적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체 대표 및 구성원들에게 상대적으로 결핍되기 쉬운 전문 기업경영지식이나 기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들로부터 수차례 제기 되었다.<sup>10)</sup>

9) 빨강색은 세무 및 경리업무, 주황색은 기업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 고조활동, 노랑색은 업무 및 근로기준법 등 법규정 준수활동, 초록색은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 파랑색은 기업체 내부 업무환경 개선 및 고객만족 활동, 남색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기개발활동, 보라색은 조직 공동체 조정활동 등으로 나누어 경영활동을 체계화시키고 있다.

10) 이는 사회적 기업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심층면접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상품(item)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시장에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해 판매하지 못하거나 재무활동에 대한 무지로 인해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로서 관련 민간전문가 및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제2질문: 인증된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은 시장경제와 노동자 신민권의 절충 차원(조작적 정의: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참여 및 개방의 정도)에서 어떻게 다른가?

공유경제 기업들도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척박한 경영환경과 그 변화에 힘든 시기를 견뎌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현실적으로 이윤극대화보다는 사회적 이상의 실현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로 돌아오는 이윤의 폭이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직원에 대한 보상 등이 취약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직원 측에서도 임금투쟁 등, 노조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유경제기업 내 조직구성원들은 노동분쟁과 구조조정이라는 갈등적 수단보다는 기업주의 이상을 구성원들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직원들이 납득·수용하는 절차<sup>11)</sup>를 제도화함으로써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의사결정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 및 공감대 형성 활동을 우선하고 있다.

제3질문: 인증된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은 우리-합리성의 보편적 개방성 차원(조작적 정의: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기여 및 인정)에서 어떻게 다른가?

공유경제기업들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활동 및 이상실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동종 유사 업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sup>12)</sup>. 때로는 이러한 이상적 기업경영방식이 이윤극대화라는 일반적 경영목표와 상충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냉소적 반응과 경영위기 상황으로 나타날 때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 홍보와 지역사회에서의 이미지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꾸준한 간접적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향토기업 진흥 및 동종 업계 활성화를 위한 협회홍보활동과 연계됨으로써 우수기업운영사례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다.

제4질문: 인증된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은 우리-합리성의 구성주의적 차원(조작적 정의: 노사간 상호 신뢰관계의 조성 노력)에서 어떻게 다른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B사의 경우, 이미 120호를 넘긴 “한 가족 신문”이라는 사내신문을 발간하여 주1회 각 매장별, 부서별로 직원들의 구체적인 소식을 글로 올리고, 이를 통해 직원들의 가정소식과 애기 돌잔치, 결혼, 사내 클럽활동 소식이나 신입사원은 물론 퇴사하

11)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혁신적 기업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전문직업인라는 자긍심을 직원들에게 고취하고 자격증 취득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체 대표의 진취적인 자세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당 기업체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대립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구조조정 및 직원들의 동요 없이 매우 안정적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12) 국내 유사·동종 업체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대만 등 인근 국가의 방문단들도 수시로 내방하여 새로운 경영전략을 벤치마킹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직원들의 인사도 올리며 서로 간의 동료애를 쌓아가고 있다. 이러한 소위 “한 가족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 신뢰를 제고시키고 상호간의 관계를 회복하며 좋은 근무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매출신장을 이어가고 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의 경우도 대체로 노사 간 상호신뢰의 정도는 일반 기업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작업장 내에서의 공동체 분위기 형성을 위한 밀도 있는 실천적 활동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3)</sup> 결과적으로 우리-합리성의 구성적 관계 차원에서 이들 기업체 대표들은 고용직원들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업주 주도적인 자세를 포기하고 일치된 소공동체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조금 더 강한 신뢰감을 얻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제5질문: 인증된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은 우리-합리성의 이상적 동기에 기초한 표현적 합리성 차원(조작적 정의: 공유경제 이상을 일상 기업 운영활동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에서 어떻게 다른가?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 공히,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기업체 대표의 남다른 동기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견고한 이론 및 이념적 토대 하에 보다 체계적으로 업체 대표의 개인적 이상을 기업경영활동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한 사회적 약자 일반에 대한 이타적 기여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체계적으로 이윤창출 활동을 관리하고 직원보상과 기업체 운영을 위한 재투자활동 및 사회적 기여를 균형감 있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문적 이론교육과 경영신천전략에 대한 학습활동이 긴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실제로 성공적인 기업경영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공유경제기업체 대표들은 국내 외에서 개설된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자신들이 평소 가져왔던 이상을 기업경영활동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습득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상적 목표 실천에 매우 유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제6질문: 인증된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은 우리-합리성의 무조건적·사전적 호혜성 차원(조작적 정의: 무조건적 나눔의 정도 및 보답 현황)에서 어떻게 다른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공유경제기업체 대표 및 구성원들은 우리-합리성의 무조건적·사전적 호혜성 차원에서 인증 사회적 기업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여 진다. 사실상 우리-합리성 차원에 있어서 적극적인 생활상의 실천을 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공유경제기업체 대표 및 동참 근로자들은 무조건적-사전적 호혜성에 기초한 행위의 효과

13) 하나의 예로서, 대전광역시 B사의 경우 기업체 대표가 전 직원들에게 보내는 비공식적 편지를 통해 본인의 이상적 목표 실천노력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협조를 진술하게 부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방적 태도가 직원들에게 큰 반향을 얻고 있다. 그 결과, 수년전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회사의 위기가 있었으나 전 직원이 동참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경영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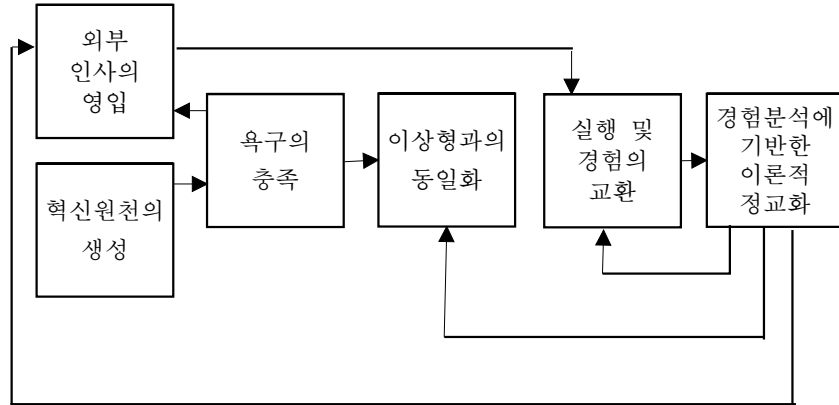
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직장생활 및 개인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공유경제기업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기적 경험 공유 및 지원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조건적·사전적 선행이 공익적 결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도, 공유경제기업체 대표 및 동참 근로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의지표현행위들이 비록 단기적 직접적인 보상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지역공동체 또는 동종 업체들에게서 기업이미지 제고로 환류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었다.

#### IV. 정책제안 및 결론

규범적 수준에 대해서 무관심한 개체주의적이고 도구적인 전통 경제적 합리성은 우리가 매일 부딪치는 수많은 일상적 선택에서 최적화(optimizing)라는 도구적 논리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반면, 현대 사회에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복잡하고 질적인 관계영역에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현재적 아이디어를 더욱 풍부하고 온전하게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다소 생경스러워 보이는 철학적 논의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최근의 경제사회적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병리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의 체제적 본질에 기인한다는 자각에 기초한다.

관련하여, 인증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 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제시하여야 할 정책적 대안 논의의 핵심이 있다. 즉, 이윤추구와 사회적 가치의 동시 추구라는 다소 불가능해 보이는 목적을 보유한 공유경제기업과 사회적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통적인 이윤추구 기업과 같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어렵게나마 자립적으로 자신들의 이상적 기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는가 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림-5)에서 Molteni(2002)가 제시하고 있는 혁신적 기업의 발전단계모형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부인사의 영입을 통한 욕구의 충족 및 이상형과의 동일화 작업이다. 제1연구질문의 검토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 특히 전체의 1/3 수준에 이르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이 그 나름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자립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진한 것은 기업생산활동에 대한 이해부족과 자구적 노력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영 전문인력 및 지식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 경영전문인력 내지 지식체계의 영입이 자칫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애초의 열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바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그림-5) 혁신적 기업의 발전단계모형의 후반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행경험의 폭넓은 교환 및 분석과 이를 통한 이론적 정교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 기업들이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으나, 이들 상호간에 자체 경험을 교환 및 분석함으로써 스스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려는 노력이 매우 취약한 점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림-5) 혁신적 기업의 발전 단계

경제적 행위와 경제적 합리성의 지배적 아이디어를 비판하는 것은 다분히 문화적 활동이다. 이는 단지 특정 종류의 행위만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합리적 행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욱 풍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즉,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에서의 경험들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적 시장선택행위와 똑같이 유효하고 어쩌면 더욱 효과적인 다른 종류의 합리성, 다시 말해, 공유 가능한 합리성, 우리-합리성, 표현적 합리성 등에 대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 저변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sup>14)</sup>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히 공유경제기업체들은 19세기 후반 사회적 경제 개념 개발 초창기의 개혁적 사회운동으로의 회귀이며, 동시에 관료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복지 프로그램화된 20세기 중·후반기 유럽의 실패경험에 대한 반성의 지혜가 보다 구체화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중시할 것을 제안한다.

공유 가능한 합리성 내지 우리-합리성의 사회 전반적 확산을 위해서는 차제에 사회적 기업의 현주소와 함께 인증 기업체 중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비영리복지조직 승계업체들의 본질적 한계를 재조명함으로써, 시장경제와 노동자 시민권 신장간의 절충을 위한 새로운 경제주체 모형이라는 사회적 기업 본연의 의미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조직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조직의 의미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리와 별도의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생산적 복지체계의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을 그 나름의 논리에 의해 발전시키면서, 이와 별도로 이른바 신경제(new economy)라는 고도 자본주의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경제와 노동자 시민권 신장간의 절충을 실현하는 새로운 경제주체의 육성을 분리시켜야 한다. 매우 유용한 정책적 도구라 하더라도, 각자가 기초하고 있는 본원적 뿌리가 구분되는 것들을 정책적 편리성 내지 이념적 의도에 의해 혼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돈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14) 다만 이러한 점에서 현재까지 국내 공유경제기업체의 숫자가 지나치게 적어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인증 사회적 기업 및 사회 일반에 전파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국내 공유경제기업체의 대폭적인 증가와 함께 보다 정교한 연구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한계가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연구원.(2009), 『사회적 기업 개요집 251』 .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연구원.(2010), 『사회적 기업 개요집 319』 .
- 박선화.(2009), 인증 사회적 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 기업 연구포럼 제2차 정책연구 세미나 발표논문집, 5-38.
- 김순양.(2008),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행정연구』, 17(3), 207-247.
- 김태영.(2008),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과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13-428.
- 김승현.(2008), 『비영리부문의 비교연구.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 서울 : 집문당.
- 노대명.(2007), 특집논문 : 사회적 경제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 한국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현황과 과제 -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5(2), 35-73.
- 노대명.(2008),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보건복지포럼』, 2008년 4월호, 62-85.
- 핑크너, 한스 & 강일선.(2006), Social Economy and Promotion Oriented Economics: How Do We Define a Common Denominator for Enterprises in Social Economics, Co-operativ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24(1), 203-224.
- 박봉희.(2008), 생활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 경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워크숍 『사회적 경제의 모색과 실천』 (2008.10.7) 발표문.
- 박 준.(2009), 청년 취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포커스』, 통권 제272호.
- 사니알 & 라빌.(2008), 프랑스 시민사회의 경협: 정치, 경제적 차원 간의 간극을 잇기 위한 시도. 에베르스 & 라빌 편저(2008),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복지-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 서울 : 나눔의 집.
- 신명호.(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통권 75호, 11-46.
- 안하이어 & 사이벨.(2002), 『제3섹터란 무엇인가? : 비영리조직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 : 아르케.
- 양용희.(2009),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로고스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70-80.
-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서울 :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 오코넬, 브라이언.(2008), 『인디펜던트 섹터-미국의 비영리부문의 역사』, 서울 : 아르케.
- 윤형근.(2005), [특집-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대안의 기업] 사회적 협동 경제와 대안적 기업의 모색. 환경과 생명. 『환경과 생명』, 통권 제46호, 87-104.
- 이정봉.(2010), 사회적 기업의 노동조건 현황과 과제. 『노동사회』, 58-64.
- 장원봉.(2006),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실천과 그 의미. 환경과 생명. 『환경과 생명』, 통권 제47호, 56-71.
- 장원봉.(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나눔의 집.
- 장원봉.(2007), 특집논문 : 사회적 경제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개념화 ; 쟁점과 과제.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5(2), 11-43.
- 장원봉.(2008), 새로운 고용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4호, 55-63.
- 장원봉.(2009),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전망. 『동향과 전망』. 통권 제75호, 47-73.
- 정병호.(1993), 한국협동조합운동의 회고와 전망.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1(1), 31-45.
- 한상진.(2001),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사회적 경제의 대안과 그 사례들.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통권 제50호, 28-49.
- 홍현미라.(2008),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접근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논총』, 23(2), 135-155.
- 황미영.(2007), 특집논문 : 사회적 경제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의 자활공동체의 실태와 전망.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5(2), 73-104.
- Bruni, L.(2002), Toward an Economic Rationality "Capable of Communion" in L. Bruni (ed.). *Toward a Multi-Dimensional Economic Culture: The Economy of Communion*, New York, NY: New City Press.
- Defourny, J. & M. Nyssens.(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in M. Nyssens(ed.). *Social Enterprise :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New York, NY: Routledge.

- Evers, A.(1995), Part of the Welfare Mix : The Third Sector as an Intermediate Area. *Voluntas*, 6(2), 159-82.
- Evers, A.(2001), The Significance of Social Capital in Multiple Goal and Resource Structure of Social Enterprise, in B. Borzaga & J. Defourny(eds.).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 Evers, A & Jean-Louis, Laville.(eds.)(2004), *The Third Sector in Europe*, UK : Edward Elgar Publishing Ltd.
- Hollis, M.(1998), *Trust within Reas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Hollis, M. & R. Sugden.(1993), Rationality in Action. *Mind*, Vol. 102.
- Laville, Jean-Louis.(2001), France: Social Enterprises Developing 'Proximity Services'. in B. Borzaga & J. Defourny(eds.).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 Molteni, M.(2002), Development Problems in Business with "Ideal Motivation" in L. Bruni (ed.). *Toward a Multi-Dimensional Economic Culture: The Economy of Communion*, New York, NY: New City Press.
- Nyssens, M.(ed.)(2006), *Social Enterprise :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New York, NY: Routledge.
- Sugden, R.(1993), Thinking as a Team.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Foundation*, Vol. 10, 69-89.

#### [저자소개]

文 丙 基 미국 Ohio State University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논문: The Impact of Local Fiscal Structure on the Equilibrium Income of Central City Residents: Utilization of a Dynamic Urban Model, 1998)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주요 저술로는 「지방의회의 이해」(박영사, 공저, 2008), "재정분권화와 지방정부 투명성 수준간의 관계: Fisman & Gatti 연구의 한국적 적실성 검증을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9. 21(1)) 외 다수가 있음. 한국지방자치학회 총무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무부처장, 행정안전부 자체평가 지방행정분과위원장 등 역임. 학문적 관심분야는 재정정책분석, 뉴 거버넌스,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 등. (☎) 070-4245-6674 E-mail : moonbg@knou.ac.kr).